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박 운 희

서울시립대 강사

1. 개 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자국의 민주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였으나 1), 프랑스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남용(les abus d'intervention do l'Etat) 2)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 개념에서 일찍 탈피하여 19세기말에 이미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을 도입하였다. 3) 프랑스가 언론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언론이 국가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기 보다는 「너무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보고자 노력했던 때문이다. 4) 이러한 노력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구체화되었다.

대혁명 기간 동안 지나친 인신공격과 반정부적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자,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신문으로부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참다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799년 베를리에(Berlier)가 인신공격적인 신문기사에 대하여 형사상·민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심의하던 국회의원 뒤로르(Dulaure)는 동 법안을 개정하여 1800년에 세계 최초로 반론권법안 5)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뒤로르가 동 법안을 제안한 목적은 ① 언론에 대한 개인의 보호, ②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로부터 독자의 보호, ③ 막강한 힘을 지닌 언론사에 대한 개인의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 ④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형사소추만으로는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 정책적인 목적 등이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6) 그로부터 22년 뒤인 1822. 3. 25. 언론의 횡포를 막으려고 노심초사하던 의회는 국회의원 베스타디에(Bestadier)가 뒤로르가 제안하였던 법안을 토대로 제안한 반론권(droit do réponse)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7)

동 법은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지시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나 편집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론을 요청 받은 일간신문은 3일 이내에, 기타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다음 호에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반론문은 유발기사(1'article provoque)8)의 두 배까지 허용되며, 무료로 게재된다. 위의 사항에 위반될 경우 손해배상 등 기타의 처벌과는 별도로 50 프랑에서 500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제 13 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9)

동 법이 입법화될 당시의 사회상은 대혁명 후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여 루이 18세가 흠정헌법(1814)을 선포하는 등 비교적 안정을 되찾은 시기로서 10), 대혁명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군소 신문들이 난립하면서 「절제 없는 보도」를 하여 일반국민과 정부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되자, 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호호하기 위하여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가 반론권 법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11)

영미법계에는 없는 이와 같은 규정을 채택하면서 입법자는 「언론의 남용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2)

그러나 동 법은 그 후 왕정과 2월 혁명, 제 2 공화정, 상정, 1871년의 혁명정부(la Commune), 제 3 공화정, 의회제(Régime parlementaire monarchique), 공화정의 복귀 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변혁기를 거치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3) 1835년 14)과 1881년 15), 1919년, 1944년, 1946년, 1954년, 1975년, 1982년, 1986년, 1987년 등 약 20 번에 걸친 수정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16),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반론권 규정은 1881. 7. 29. 의 출판법 17) 제 13 조로서 그 동안 게재형식, 청구절차, 벌금, 허용절구위 등 세부적 인사 항에만 변화가 있었을 뿐, 법조문의 주요 골격은 170 여 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8)

한편, 프랑스는 1881년의 출판법 제 12 조에서 반론결과는 별도로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Le droit de rectification)을 규정하였는 바, 이상은 모두 신문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체제를 지켜온 방송에 대하여는 그 동안 반론권도 정정보도청구권도 인정하여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2. 7. 3. 법부터(§8) 방송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TV가 민영화되기 시작한 1982년부터는 TV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되었다(§6). 다만, 그 대상과 범위는 신문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신문에서의 반론권의 주체와 객체, 내용, 범위, 구제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어 방송의 경우를 살펴본 다음,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법제가 독특하여 언론법이나 방송법이 일목요연하게 단독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81년도 출판법 제 12 조(정정보도청구권)와 제 13 조(반론권)를 기본으로 20 여 회에 걸친 수정형식의 법률(loi)과 décret 19)의 개정, 삭제, 폐지 등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법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면 제정 연도와 법조문을 기재하고 그 밖에 판례 20)와 학설을 인용한 것은 각주에서 이를 밝혔다.

II. 반론권

1. 신문에 있어서의 반론권

(1) 주체

1) 자연인

1881. 7. 29. 의 출판법 제 13 조는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보도에서 <지명되고 지시된 모든 사람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명된」 자란 성명이 명기된 자연인을 비롯하여 보도에서 상호나 명칭이 밝혀진 단체를 말하며, 「지시된」 자는 성명이나 상호, 명칭이 비록 명기되지는 아니 하였어도 표제나 본문, 또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보도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21)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이름 전체가 명기되지 아니하였어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동명이인일 경우라도 독자들이 보아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본인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2)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도기관이 「혼동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반론문 게재의 의무를 진다. 23) 즉, 기사작성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으나, 기사중의 사실로 인하여 특정인이 관련되는, 이른바 착오의 위험이 있는 미필적 침해의 경우에도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발기사로 인하여 지명되고 지시된 자의 어떤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또는 그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명 또는 지시」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관계자 24)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반론의 이익도 본인의 판단에 맡길 뿐, 실정법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프랑스의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giniral et absolu))인 성격을 지녔다. 25)

반론청구권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만이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6)

기사에서 지명되거나 지시되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반론을 제기해 놓은 자가 절차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랜동안 학설상의 다툼이 지속되었으나, 27) 학자들의 이론과 판례의 축적으로 현재는 사자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그 상속인들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 1881 년법(§34 II)에서는 「사자의 명예에 관하여 중상(diffamation)이나 모욕(injure)이 행해진 경우에만 그 배우자 또는 일반수유자(taires universales)에게 반론권이 인정된다」 고 규정되어 제한적으로 인정되다가 1919 년법(§34 IV)에서는 「유족과 후계들의 명예는 물론, 사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학자들의 주장을 파기원이 받아들여 본인의 상속인이나 수유자(gataire), 배우자-이하 관계자라 한다-가 사자를 대신하여 일반적인 반론권의 주체로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파기원도 판례를 통하여 이러한 입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9) 이렇게 사자에 대한 반론권이 그 관계자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자의 인격은 개인적으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역사적 비평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인격보호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30)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는 직접관계인의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31) 일반적으로 의사와 경찰의 반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2)

그밖에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책임자나 기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되며, 33) 이러한 취지는 반론권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다.

2) 법인

동 법의 「법인」에는 법인격을 갖춘 영리·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 협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도 반론권의 목적이 영리적·상업적이지 아니하는 한 모두

포함된다. 34) 바로 이 점에서도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권리(le droit ge'neral et absolu)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5)

법인의 반론권행사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그 자체로 지명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자로만 지명되었을 경우 반론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6) 이렇듯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반론권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제기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1960 년대에 Le Monde 지는 1 주일에 2~3 번의 반론문 게재요구를 받았고, Le Figaro 지와 France Soir 지는 한 달에 평균 5~10 건의 반론게재요구를 받았다. 37)

(2) 객체(반론의 대상)

자신의 보도로 인하여 반론의 의무를 지는 언론사는 모든 신문과 정기간행물이다. 따라서 발행부수나 규모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모두 그 대상이 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보와 같이 제한된 내부용 회보인 경우에도 반론권이 인정되는 바, 그것은 반론권의 성격이 「개인의 권리는 공개된 대중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대중 앞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8) 따라서 프랑스 국내에서 발간되는 외국신문도 비록 그들 나라에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프랑스 안에서는 반론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원칙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반론권 협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반서적, 공문서 등 비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39) 정기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성격을 띠는 것, 예를 들어 관보, 판례집, 중앙의회 및 지방의회의 의사록 등은 여기서 제외되고, 40) 국회의 공개심의에 관한 보고기사는 그 게재가 선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제소도 금지된다(§41 I, II). 그러나, 공적 성격을 띤 정기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공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기사를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행 책임자는 반론의 의무를 진다. 41)

유발기사는 단순한 사실보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논평, 르뽀기사, 의견, 가치판단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 등에 대한 비평이나 서평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2) 또 종교기관지 등에 게재된 사제의 강론, 축하 메시지 등에 대하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43) 재판관련기사에 대하여도 판례집에 수록된 경우에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44) 일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반론권이 인정된다(1881 년 법 §13, §34).45) 그러나 판결문에 관한 논평없이 단순히 판결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검찰과 정부위원회의 결정, 법관의 보고서 등)만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6) 이밖에 법관(magistrat)47)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에 대하여는 법관 개인의 반론권 제기 외에도 형법 제 226 조에 따라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재판관련기사는 성실하고 선의의 태도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반론권만 인정될 뿐, 기타 명예훼손이나 공공질서위반 등으로 인한 소권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앞서 살펴본. 국회의 공개심의에 관한 보고기사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반론권을 비롯한 일체의 소권행사를 금지시키고 있다(§41 I.

II)48)는 점에서 의회관련기사와 사법부관련기사에 대한반론권의 인정범위에 차이가 난다. 이러한 법규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정치관련기사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의회에 관한 동정기사, 심의과정 등에 관한 르뽀기사도 그것이 선의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반론권을 비롯하여 어떤 소권 행사할 수 없다(1919년 법 §41 I, II).

유발기사는 ① 독자적인 보도인가, ② 기타 통신,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발췌 또는 인용 보도한 것인가, ③ 전제된 것인가 등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일단 자신의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기사에 관하여는 반론의 책임을 진다. 또 보도를 통하여 「지명되고 거론된 자」는 단순히 지명되고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발기사에서 비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기사에서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반론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이미 객관화된 자료」이므로 여기서 제외된다. 49) 그 밖에 정치적 논쟁을 다룬 기사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반론권이 입법화될 19세기 당시, 극심하였던 프랑스의 정치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인신공격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적 침해상황 50)을 교훈 삼아 정치논쟁은 반론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데다가, 51)정치 자유를 「공적행위」로 보는 프랑스의 고유한 관념과 정치적 관례에 따라 형성된 결과이다. 52)

반론권의 대상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부정확하다거나 잘못되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가 스스로 범한 오류 (허위보도, 왜유보도, 부정확한 보도 등)를 반론이 제기되기 전에 언론 스스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반론권이 유발기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보다 합법적이고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53)

또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이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해설 또는 비평을 덧붙인 경우 본인은 그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바(1919년법 §13④),54) 이러한 제도는 「언론사의 일방적인 독백에 열린 대화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55)

이밖에 게재된 사진에 대하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진설명이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특정인임이 밝혀지면, 본인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56)

프랑스에서 이렇게 반론권의 대상이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보도에 대한 반론권 제기가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까닭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만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리(vérité)를 발견할 수 있어 바람직한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자유주의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프랑스의 반론권과 독일의 반론권의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57)

(3) 반론요청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단순히 지시된 자는 누구라도 해당 매체에 대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론문 게재의 요청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58) 수신자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 책임자 앞으로 수령확인서(1'accuse de reception) 59)가 동봉된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을 통해 반론게재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60) 그러나 예외적으로 편집자 앞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보며(1974. 5. 26. 법에 의거한 1975년 de'fcret 규정), 급박한 경우에는 전보로 반론문을 보낼 수도 있으며, 집달관을 통해 반론문을 보낼 수도 있다. 61) 따라서 반론문의 형식과 그 전달방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반론문의 내용과 유발기사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이다.

반론권의 행사기간은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1년 안으로 되어 있어(1919년법 §13 X)상당히 길게 인정하고 있다. 「게재된 날」이라 함은 문제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배포된 날」이 아니라 「발행일」을 의미한다. 62) 즉, 발행일보다 빨리 배포되었을지라도 기간 계산은 발행일로부터 시작되며, 「본인이 안 날」과는 상관이 없다.

(4) 반론문의 내용과 형식

반론문의 내용과 그 작성은 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자의 자유이다. 63) 반론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발기사에 관한 본인의 견해표명이므로 주관적,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하나, 그 내용은 반드시 유발기사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발기사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64) 그 내용이 국민적 정서에 위배되는 이른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65)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6)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67) 진실한 내용이 아닌 경우(허위의 내용), 68) 형법에 저촉되는 내용, 69) 그리고 궤변이나 술책과 같이 정당한 항변이 아닌, 부당한 반론 70)인 경우에는 1944. 5. 6. 의 시행령에 의하여 반론문 게재요청이 거절된다. 이 밖에도 본인이 지명 또는 지시된 유발기사의 공표를 사전에 분명히 허용한 경우에는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반론게재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발행인은 반론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반론권자만이 자신의 반론문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71) 따라서 반론권자는 자신의 반론문에 인용문구, 문학작품, 판결문 기타 어떠한 내용이라도 발췌하여 실을 수 있다. 72) 이러한 점에서도 프랑스 반론권의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성격」이 엿보인다.

반론을 제기받은 언론사는 위와 같은 반론게재거부사유를 들어 반론문게재요청을 극부할 수 있으나, 만일 언론사의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일 경우 발행인은 게재거부죄로 처벌된다. 반론문게재거부죄에는 악의의 입증의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부일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73) 게재가 거부된 반론문은 반론권자가 이를 수정하여 기간내에 재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매체는 재반론문이 이상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5) 반론문의 길이

반론문 작성상의 일정한 형식은 없으나, 반론문의 길이는 최저 50 줄(lignes)에서 최고 100 줄로 제한된다. 원래 반론문은 유발기사와 같은 길이로 게재되는 것이 원칙이고, 1822년 법에는 유발기사의 2 배까지 무료로 게재할 수 있었으나, 1881년 법에서는 최저 50 줄, 최고 200 줄로 제한되었고, 1972년 법에서는 다시 최저 50 줄, 최고 100 줄로 줄어들었다(§13 IV, V).

동 제한을 넘는 반론문에 대하여 1919년법 이전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자가 넘치는 분량만큼 통상의 사법공고료(prix des annonces Judiciaires)⁷⁴로 계산하여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반론문의 길이에 제한을 두어 초과분에 대한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고 100 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언론사의 빈번한 반론문 게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기사라 할지라도 최소한 50 줄은 확보해 줌으로써 반론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반론문의 내용 가운데 제목, 피해자의 성명, 주소, 인사말, 서명 등은 반론문의 전체 길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1881년 법 §13) 반론문의 실제분양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 되며, 반론문의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유발기사의 본문과 연관되는 제목이나 파주 등이 차지하는 총 공간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실제로는 유발기사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된 기사가 유발기사 전체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 일부분에 한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을 고려하여 반론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론길이의 판단은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⁷⁵) 이밖에 동일한 매체가 여러 호에 걸쳐 유발 기사를 게재하였을 경우, 각 호에 대하여 모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파기원은 「각각의 유발기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일괄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각각의 유발기사가 서로 다른 내용의 독립된 기사일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⁷⁶)

이렇게 반론문의 길이를 반론 제기권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반론문의 길이를 초과하는 반론문에 대하여는 해당신문사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무조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된 길이만큼 잘라서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게재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⁷⁷) 만일 길이가 초과한다는 이유로 「법정 길이만큼 잘라서」 게재한 경우에는 「전문게재의무」에 위반된다.⁷⁸) 그러나 반론문에 대한 논평은 가능하다. 논평의 위치는 반론문의 앞뒤, 또는 다른 쪽에 게재할 수 있으나, 반론문에 삽입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첨삭금지」 조항(§13 VI)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 때 반론권자는 논평에 대한 반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반론을 연장하려는 권리의 남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반론문의 게재

1881년법 제 13 조는 반론문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으며, 동 조항은 그 후의 20여 차례에 걸친 수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반론문은 반론권자가 제기한 문안 그대로 전재 되어야 하며, 요구의 정당성 등을 해당 언론사가 심사할 수 없으므로, 게재된 반론문의 내용에 변화(첨삭을 가했다든지, 해설을 덧붙이는 행위 등)가 생겼을 경우, 반론권자는 이를 반론 게재거절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9)

반론문의 게재는 무상이 원칙이나, 최저 50 줄, 최고 100 줄의 길이제한을 받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반론문의 게재일과 게재형식에 관하여 알아본다

1) 게재일

반론문은 「유발 기사를 읽은 독자의 머리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반론문의 게재일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도 평상시와 선거기간 중으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평상시의 반론문 게재일은 일간지의 경우 반론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이며, 80) 정기간행물의 경우 반론문 수령 후 2일 이후에 발행되는 가장 가까운 호, 81) 또는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매체의 경우에는 늦어도 그 다음 다음 호까지 반드시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13 I).

그러나 1919년 법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동기간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 때 반론문은 신문사가 반론문 게재로 인하여 생기는 지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6시간 전」에 해당언론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제 3자가 신문인쇄시간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그 시간을 검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13 IX). 만일 발행인이 신문인쇄시간을 검찰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8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신문인쇄시간을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인쇄시간 부족이 있다는 정당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선거기간 중에 관한 예외적 규정은 「특히 선거기간 중에 인신공격, 명예훼손, 오보, 허위보도 등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이러한 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치유를 빨리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82)

2) 게재형식

반론문은 유발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게재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유발기사가 게재되었던 것과 똑같은 지면, 같은 위치, 같은 활자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881년법 제 13 조 3 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반론권이나 정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유발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반론문이 게재되어야만 독자들이 받았던 정보를 시정하고 보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지면에 대한 적용은 그리 엄격한 편은 아니어서 지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아니하는 한 다소 변동이 있어도 판례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83)

특히 반론문이 실려야 할 원래의 지면에 반론문이 게재되어 있는 지면 수를 공고하고 그 지면에 반론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반론문이 독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되었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였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 지면」은 「상당한 지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84) 그러나 동일한 활자 크기가 아니거나 눈에 띄는 위치가 아닌 곳으로 옮겨 신는 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게재거부로 보아 재게재의 대상이 되거나 게재 거부죄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같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라 할지라도 시내판, 지방판, 해외판 등 판을 달리 하여 인쇄되거나 배포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유발기사가 실렸던 지역, 해당판에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13VI). 85)

(7) 법적 구제

반론게재가 거부되면 반론권자는 거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관할 경범죄재판소(tribunaux correctionnels) 86)에 반론문 게재 거부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론을 강제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1881 년법 §13) .88)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반론게재청구 기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며, 제소 후 법원의 소환기간도 24시간 내로 단축된다. 강제반론권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관은 소환영상 89) 발부일로부터 3일 이내 90)에 당사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91), 진술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심절차(1'instruction de 1'affaire)없이 급속심리(refere)92)를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1919년법 §13 VII,新民소법 §808). 급속심리에 피고(언론사측)가 출정하지 아니할 경우 93) 당사자의 구두변론 없이 원고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심리결과 언론사가 부당하게 게재를 거부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판결은 게재될 때까지 해당매체의 경제력과 규모, 발행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당으로 계산되는 연체료를 반론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13 VIII).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심판결 후 2주일 안에 고등법원(courd'appel)에 항소할 수 있다. 94) 만일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95), 해당 매체는 원래의 반론권자의 비용으로 이러한 사실을 게재할 수 있다. 해당매체가 폐간된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매체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한다. 96)

반론권자는 「반론문 게재를 명하는 소」와는 별도로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반론 게재 거부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바, 반론문 게재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일반적으로 200 프랑 이상 2,000 프랑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정해진다. 97)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론문의 게재를 거부한 언론사와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18,000 프랑 이상 180,000 프랑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98), 발행인은 6일 이상 3월까지의 고형에 처해진다(§13 IX). 따라서 반론문 게재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언론매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밖에 반론권자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의 「게재거부에 대한 반론문 강제 게재 명령결정문」을 해당 매체의 경비부담으로 타 매체에 게재해 줄 것을 고등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新民소법 §1036).

그러나 이 모든 소송절차는 제소권자의 고소취하로 소송개시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1881년 법제 49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반론문이 게재되는 경우도 많다. 99)

2.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프랑스에 있어서 반론권은 기본적으로 인쇄매체에 부과된 의무사항이었을 뿐, 방송에 대하여는 오랜동안 인정되지 않았었다.

현실적으로는 방송에 있어서도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이 야기되나, 방송의 공영체제 100)의 성격상 「방송은 신문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한다」고 믿어 왔으므로 반론권이 부인되었었다 101) 또 방송의 경우 「증거로서의 생명력을 갖는 활자가 반영구적으로 존속되는 신문과는 달리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파가 공중에 흩어져버리므로 유발기사(1'emmission en cause)의 선별과 증거채집, 제출, 입증이 힘들고, 설사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론시간의 배정과 반론을 하는 방법 102) 이 기술적으로 까다롭다」는 이유로 반론방송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였다. 103)

그러나 대중매체의 통신수단이 활자에 의한 단순한 방법으로부터 보다 전파력과 영향력이 강한 음성, 사진, 영상 등 전파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방송에 대한 반론권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힘입어 1933년에는 국민의회의 입법연구회가 라디오에 대한 반론권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였고 104), 1937년과 1957년에는 부제안으로 「방송에 관한 반론권법 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105), 1960년에는 의원입법으로 역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방송에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처음엔 관심을 갖지 아니하던 시청자들도 반론이 제기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106)

그러나 방송에서의 인격권 침해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자 의회는 1972. 7. 3. 프랑스방송협회법(n°72~553, Loi du Office de Radio et Television Francaise, 이하 ORTF 라 함)을 개정하면서 방송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하게 되었다(§8).107) 1972년의 ORTF 법 제 8 조는 「방송(l'emission)에 의하여 명예나 명성이 침해된 자연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였고, 1982. 7. 29. 법(n° 82~652)108) 제 6 조와 1983. 5. 25.의 décret(n° 83~419)에서는 비영리법인에게도 반론권이 확대 인정되었을 뿐,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 후 방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된 것은 TV가 민영화되고,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동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고 난 후에 제정된 1985.12. 13. 법(Loi n°85~1321)과 1986. 9. 30. 법(n° 86~1067), 그리고 1987. 4. 6. de'cret(n° 87~2460)에 의해서 이므로 극히 최근의 일이다. 또 방송과 영화가 아닌 모든 시청각 매체에 대하여 반론권이 인정된 것도 1985년법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인쇄 매체에서보다 많이 제한적이며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하에서는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구성요소-주체, 객체(대상), 내용 등-와 법적 구제절차 등을 신문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들만 살펴본다.

(1) 주체

법원의 엄격한 법 해석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72. 7. 3. 의 ORTF 법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전파매체와 영주 등 시청각매체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인정하였는바, 동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명성을 침해 받은 자연인」에 한하였다(§8). 따라서 법인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1982년 프랑스의 텔레비전방송이 민영화되면서 ORTF 법과 방송법도 통합·개정되어 1982. 7. 29. 법 제 6 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즉 공법인에게도 반론권이 인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영리법인만 반론권의 주체에서 제외되자, 「법 앞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어헌법평의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109) 헌법원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언론소유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반론권은 인간의 <대화할 권리>와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공격에 대한 반격의 수단이므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동 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e'carte).110)

동 법이 위헌 선언된 뒤, 1983. 5. 25. 의 de'cret 와 1986. 9. 30. 법, 1987. 4. 6.의 de'cret(n°87~246)의 규정에 따라 현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과 영화, 뉴미디어 등 비디오매체에 의하여 명예와 명성이 침해된 모든 사람」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986. 9. 30. 법§110 II e), 자연인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수권자, 배우자 등 직접관계자의 순으로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987. 4. 6. décret §1).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없는 조합과 협회, 각종 단체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도 집단으로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1)이처럼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권이 처음부터 법규정에 따라 보장된 것인 반면에, 방송의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친 법규의 개정과 판례를 통하여 집적되었다. 그러나 방송에 의하여 명예나 명성이 훼손된 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경우 반론권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소송(1881 년법 §31)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동법 §33)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인쇄매체에 있어서보다 여전히 제한적이다.

(2) 객체(반론의 대상)

1)매체

방송에서 처음 반론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곳은 라디오로서 법적으로는 1982년까지 라디오도 국영체제였으나, 1945년부터 프랑스 영내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전파를 발사하는 외국 국적의 민간방송, 112) 이른바 변방라디오방송국(radios Périphériques)113)이 생겨남에 따라 프랑스는 이들 변방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 할당과 방송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조건으로 「방송활동 중 프랑스인의 재인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반론권을 인정한다」는 사항을 엄수하도록 하였다. 즉, 처음에는 자국의 라디오가 아닌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방송국에 대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4) 그 후 자국의 라디오와 TV, 영화에 대해서는 1972. 7 3. 법 제 8 조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기타 케이블 TV 와

인공위성방송, 전자통신 등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1986. 9.30.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115)

2) 유발방송(1'emission en cause)

1982년 법은 「방송내용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훼손된 자는 누구든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6),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단지 「명예와 명성」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명성이라 함은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바, 인쇄매체에서처럼 「단지 지명되고 지시된 자는 누구든지 유발기사의 종류(사실적 주장, 논평, 가치판단, 각종 문화비평 등)와 내용(비판적 기사, 칭찬, 동명이인 등)에 상관없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방송활동에 의하여 인신공격, 비난, 비판, 허위보도 등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쇄매체의 경우 「보도에서 지명되고 지시된 자는 누구든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다. 116)

그러나 유발방송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뉴스시간, 드라마, 쇼, 토론, 타큐멘터리 등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본인의 명예와 명성이 침해되면 그것으로 반론권 행사의 요건은 되는 것이다. 비록 방송출연자가 프로그램에 초대손님으로 출연하여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을지라도 반론권자는 공표책임자인 방송사 대표에게 반론을 요청하면 된다. 발언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는 있어도 반론의 의무자는 아닌 것이다.

방송의 증거와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방송사는 자체방송물의 녹음테이프를 15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반론이 제기된 유발방송은 반론에 관한 제반 법적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보존기간이 연장된다(1987. 4. 6. décret §7). 법원에 반론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방송 녹음테이프 제출은 방송사의 의무이며, 녹음테이프를 파기할 경우 형법상의 제 5급 경범죄에 준하는 형사제재(벌금형)를 받으며, 우범은 가중처벌된다.(동 de'cret §9)

(3) 반론요청

「방송내용으로 명예와 명성이 훼손된 자」는 유발방송 이후 8일 이내에 공표책임자인 방송사 대표에게 수령확인서(1'accuse de réception)가 동봉된 등기우편으로 반론을 요청하여야 한다(1982. 7. 29. 법 §6 V, 1987. 4. 6. décret §2). 「8일내」는 우편물의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도착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발신일이다 117) 그러나 반론권자가 해외영사 118)나 해외도 719)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반론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유발방송 후 15일 이내에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해외영사나 해외도에서 유발방송이 방송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987.4. 6. décret §22 II). 위와 같은 모든 법정기간은 선거운동기간에는 24시간으로 단축된다(1982. 7. 29. 법, Loi §6 VIII).

반론요청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자의 경우 직접관계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987. 4. 6. décret§1). 1975. 5. 13.의 Décret에서는 수취인이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20) 현재는 공표책임자인 각 방송사의 대표이다(동 1 décret § 2).

반론요청서의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유발방송이 방송된 날짜와 시간, 프로그램명, 명예와 명성을 훼손한 내용, 반론방송의 내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1986. 9. 30. 법 §110의 2) 이상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각 방송사대표는 2주일 안에 반론권자를 상대로 보충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충서 요구도 수령확인서가 동봉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반론문의 내용은 인쇄매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질서, 미풍양속, 제 3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될 경우 방송사는 반론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론문의 작성은 반론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반론권자의 동의를 받아 방송사가 할 수도 있다.

반론요청서를 받은 방송사 대표는 8일 안에 반론권자에게 반론방송의 여부를 통고하여야 하나, 선거운동 기간에는 24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동 통고도 수령확인서가 동봉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반론요청서와 보충서 요구, 회신통고 등의 사실입증책임이 동 우편물을 보낸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4) 반론방송(la diffusion de la re'ponse)

반론권자가 제기한 반론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방송사는 반론권자에게 반론방송의 날짜와 시간, 프로그램명, 반론의 내용 등을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1987. 4. 6. décret §4)

반론방송은 유발방송과 동일한 청취조건 121)과 동일한 기술조건 122)에서 방송되어야 한다(1982.7 29. 법 §6III). 다만 유발방송의 프로그램형식 -뉴스, 드라마, 쇼, 토론, 타큐멘터리 등-에 상관없이 반론방송은 해당 프로그램의 서두에서 아나운서의 고지방송형식으로 전달된다(1987. 4.6, decret §5). 바로 이러한 고지방송형식 때문에 「동일한 방송조건」이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청취조건」이라고 한 것이다. 123) 반론방송의 이러한 형식은 영화와 비디오테이프 등 기타의 시청각 통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영화의 경우 반론방송은 1회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상영될 때마다 반복되어 24시간(1일)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동 décret §3II.) 124)

유발방송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띠는 경우, 반론방송 일자와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대심법원 125)에 제소하게 된다(1982. 7. 29. 법 §6VI).

반론방송은 무료이나(1987. 4. 6. de'cret §5IV), 반론문은 타자기로 쳐서 30줄을 넘을 수 없으며, 반론시간은 아나운서가 일반적인 속도로 반론문을 읽어서 2분을 넘을 수 없다(동 décret §6 II). 인쇄매체에서와는 달리 이상과 같은 제한을 어길 경우에는 통상의 광고료를 내고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론요청이 거부된다. 따라서 인쇄매체에서의 반론문과 같은 「동일할자」, 「최저 50 줄, 최고 100 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발방송의 시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분의 방송시간을 할당받을 뿐이다.

반론방송은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방송되어야 하며, 비디오(Vidéographie, Vidéocassette, Vidéodisque)의 경우 반론이 아닌 정정(correction)이나 삭제(suppression)는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을 후 10일 내에 하여야 하고(1987. 4. 6. décret

§51), 영화의 경우에는 요구 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982. 7. 29. 법 §89).

(5) 법적구제

만일 반론권자의 반론요구를 해당 방송사가 거절하거나 침묵을 지킬 경우, 또는 반론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 반론내용이나 반론문의 길이, 시간 등에 대한 분쟁, 요구자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방송 날짜와 시간 등에 관하여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할 때, 반론권자는 대심법원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속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1982. 7. 29. 법 §6 VI). 126)

1975. 5. 13. 법(§6)에서는 전국반론권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u Droit de la Reponse) 127)를 두어 방송에서의 반론권 분쟁문제를 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만 국가평의회(Conseil d'Etat)에 상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6), 1983. 5. 25. 의 de'cret 이후부터는 방송에서의 반론권 분쟁도 법원에 제소하게 되어있다. 이 때 대심법원에 있어서의 법적 절차는 인쇄매체에 있어서와 동일하나, 적용기간만이 달라 신민사소송법 제 752 조의 적용을 받는다. 128)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뉴미디어, 기타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권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제소절차도 위와 동일하다(1985. 12. 13. 법 §§94~95).

급속심리 결과 대심법원장은 반론방송을 강제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가 부당하게 반론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법원은 방송사 대표에게 2,000 프랑에서 50,000 프랑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벌금형은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동 결정은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더라도 집행명령(ordonnance exécutoire)을 발할 수 있으므로(1982. 7. 29. 법 §6VII, 1986.9. 30. 법 §8, 신민소법 §489) 강제성이 강하다. 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으나, 학자들은 인쇄매체에서와 같이 반론권자의 비용으로 「유발방송이 본인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내용과 함께 「법원의 판결내용도 방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29)

강제반론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사 대표에게는 인쇄매체의 발행인과 같은 형사제재가 적용된다(1987. 4. 6. décret).

III. 정정보도청구권

프랑스는 반론권 외에 정정보도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반론권」이라 표현하던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표현하던 용어상의 차이는 있어도 양자를 동일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구별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합의의 반론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실정법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1822. 3. 25.의 법 제 10 조로부터 유래하는 정정보도청구권(Le droit de rectification)은 법 제정 당시에는 반론권과 마찬가지로 격변하는 사회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프랑스대혁명을 지나면서부터 활발히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30) 반론권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131)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역시 1881. 7. 29. 법 제 12 조로서,132) 동 조는 일반인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단지 「공권의 수탁자(de'positairesde l'authorite' publique).」인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신문기사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정정문을 가장 가까운 다음 발행호의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133) 이는 국민이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1822년 이 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은 존재하였으나, 1819. 6. 8.의 출판법은 정부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정부의 공보사항(Communiqués)이나 정부활동에 관한 오보에 대하여 유료로 정정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었을 뿐, 공무원의 권리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난다. 134)이하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권리주체와, 객체(정정의 대상), 권리행사방법 등 반론권과 구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동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주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체는 공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뿐이다. 공무원의 의미는 광의로 해석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 받은 모든 공무수행자」, 즉 상하 양원의원, 각 부처 근무자,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종교단체장, 임시 또는 고정직으로 공무원직을 임명 받은 자,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민간인, 배심원, 증인 등이 모두 포함되나(1881년법 §31), 실제로는 장관, 도지사, 시장, 구청장, 행정관, 경찰서장 등 주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관등이 주로 그 대리인을 통하여 동 권리를 행사한다.135) 이들 공무원 또는 대리인 직급의 고하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36) 따라서 일반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 137)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그 사람이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말한 내용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잘못 보도되었을 경우, 동 교사는 반론권만 행사할 수 있을뿐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동 교사는정부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는데 그 문제에 대한 기사가 잘못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정부대리인의 자격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138)

그런데, 프랑스에 있어서 공무원만이 행사할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빈번하게 행사되었을 뿐, 정치가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선 1960년 이후에는 거의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다. 139)

2. 객체(정정의 대상)

1881. 7. 29.법 제 12 조는 「정부의 활동이나 정책결정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잘못 보도하였거나 부정확하게 보도하였을 경우, 정부당국자는 해당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그에 관한 정정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오보나 허위보도 등 부정확한 사실보도이다. 결국 프랑스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부의 공보사항에 관한 기사나 공무수행, 또는 그 행위를 하는 공적 인물에 관한 기사가 잘못 또는 부정확하게 보도되었을 경우, 즉 공공영역(Secteurpublic)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공무수행이 「부정확하게 보도」된 예로는 명백한 허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소개되거나 제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경우, 또는 기만이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게 보도되었으면 역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확」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활동의 내용 그 자체에 관한 허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무활동이 이루어진 배경까지도 포함된다 동 규정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행위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인지시키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권위 있는 수단일 뿐 공무원이나 정부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140)

그러나 정부활동에 대한 단순한 비평기사나 논평에 대하여는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비평이나 논평이 문제될 경우에는 반론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가 정부의 공적 인물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 그것이 공무수행에 관한 것이며, 셋째, 그 공무수행이 부정확하게 보도되었어야 한다. 141)

또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한정되므로 단행본이나 기타 저작물, 또는 전단 이나 비정기간행물에 실린 내용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라디오나 TV 등 방송에 대하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부당국의 활동에 관한 보도가 잘못된 것일 경우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공공의 정신」과 「공적 진실」 142)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관례에 따라 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행정행위의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권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자의 손에 방어수단(moyen de de'fense)을 준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단(moyen d'information)을 제공하는 것」 143)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4)

결국 프랑스에 있어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목적은 일반국민이 당국의 피통치자 결정 사실이나 의미, 영향범위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정보도의 청구방법

1881년법 제 12 조는 정정보도문이 「유발기사의 2 배를 넘을 수 없다」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 학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실행방법-정정문의 작성, 내용, 정정보도의 요구방법, 소송절차 등-은 반론권의 경우를 준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활동의 내용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잘못 보도될 경우, 그 업무책임자는 당해 매체의 발행인을 상대로 정정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정정문의 게재요구는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수령확인서가 동봉된 등기 우편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146) 정정문은 반론문과는 달리 유발기사의 2 배까지, 유발기사와 동일한 활자로 무료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유발기사의 2 배」란 문제된 기사의 전체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 가운데 문제된 정부당국 또는 공무원의 활동이나 정책이 언급된 부분의 2 배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이 유발기사의 2 배를 넘을 경우 발행인은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정정문을 재작성하여 게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발행인이 초과되는 분량에 대한 게재료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당해 매체의 발행인은 비록 자신의 유발기사가 타 매체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전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으며, 이미 진실이 밝혀져 유발기사가 오보였음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또는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발행인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반론권의 경우와 같다. 147)

4. 정정보도문의 게재

정정문은 해당 매체가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후 가장 가까운 다음 발행 호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여야 한다(1881년법 제 12 조). 「가장 가까운 다음 발행 호」란 정정보도청구서가 도착한 이후에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발행되는 호를 말하는바, 만일 그 호의 인쇄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그 다음 호가 된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음 발행 호」가 되는 셈인데, 이는 아직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언론사들이 자체 인쇄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규정이나,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만일 이미 인쇄에 들어간 호에 정정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쇄기계의 작동을 멈추도록 요구할 경우, 정부는 유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인쇄를 다시 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언론사에 손해가 미치기 때문이다. 148)

정정보도문의 게재 위치는 유발기사와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해당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하여야 한다(§12). 그것은 유발기사가 어느 지면에 실렸든 정정보도문은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독자들에게 정정기사의 내용을 각별히 주지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 정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정문도 반론문과 같이 발행인에 의한 침식이 금지되나, 그에 관한 설명문이나 논평은 정정문의 앞뒤로 게재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설명이나 논평이 정부활동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일 경우 재정정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정정문의 게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출판법 위반이 되어 경범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제소하게 되는 바, 그 소송절차는 반론권의 경우와 동일하다(1881 년법 §42). 이 같은 게재거부죄는 명백하게 게재를 거절하는 경우 외에도, 정정문에 첨삭을 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활자체를 다르게 하는 행위, 1 면이 아닌 다른 지면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거절에 대한 제재는 반론권보다 훨씬 약하여 최하 360 프랑에서 최고 8,000 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1975. 5. 13. décret). 정정문의 강제게재 등의 절차와 제재방법은 반론문의 경우와 동일하다.

정정문의 게재를 요구한 공무원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149)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50) 그것은 「동 제도가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활동에 관한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151)

IV. 맺는말

프랑스 반론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파기원이 판례를 통하여 스스로 밝혔듯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반론권의 대상이 신문이나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논평이나 의견, 학술, 예술작품, 서평 등 모든 가치판단과 영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둘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도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와 사위를 비롯하여 사자에게 까지 인정되고 있고 셋째, 반론문의 내용과 형식이 전적으로 반론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넷째, 반론권 행사의 제척사유가 대단히 한정적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론권자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고 다섯째, 반론권 제기기간이 1 년으로 상당히 길게 인정되며 여섯째, 언론매체의 반론문 게재의무가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게재를 거부한 발행인에게는 민사상의 제재는 물론, 형사제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는 한마디로 대단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반론권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체계적이고 상세한 법조문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바, 기본적으로 원칙만 정하여 놓은 1881 년법 제 12 조(정정권)와 제 13 조(반론권)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실무계의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형성된 제도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152) 다시 말해 단순하고 간결한 법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각급법원은 일관되고 명쾌한 이론으로 판례를 집적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법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판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153)

이러한 프랑스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19 세기 초 극히 불안하였던 정정을 틈타 기승을 부렸던 언론의 무절제한 오보와 인신공격에 대하여 국민과정부가 모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반론권을 제도화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 일반국민의 반론권외에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따로 규정하여, 정부의 공보사항과 공무집행결과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정부의 특권을 제도화한 것도 프랑스만이 지닌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절대적인」 반론권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아니하다. 즉, 「개인의 법익보호에 주력하다 보니 언론매체에 주어지는 부담이 지나치고, 반론 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154) 그러나, 동 제도가 입법화된 직후부터 약 30~40년 동안은 동 제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거부감도 심하였고, 일반국민의 남용도 많았으나,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진 1960년대 이후에는 반론권의 행사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요 일간지의 경우 한달에 평균 3~4건의 반론게재요구를 받고 있을 뿐이며,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더욱 줄어들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155)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이제 정착되어 언론들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론문이나 정정보도문을 성실히 게재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동 권리들을 남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히고 있다. 156)

결국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는 정보와 보도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자체로서 귀중한 정보원이 되었으므로, 157) 헌법원이 선언한 바 대로 「반론권은 인간의 대화할 권리와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이자 수단」 158)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Maurice Duberger, Ele'ment de Droit public, P. U F., 1988, 220 쪽.
- 2) 프랑스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국가개입의 예로는 허가제, 공탁금제, 압류, 정간, 검열, 기사제제 등이 있었다.
- 3) Fernand Terrou, Legislation for Press, Film and Radio, Paris, UNESCO, 1951, 13 쪽.
- 4) 프랑스에 있어서 언론의 혹심한 탄압은 알제리전쟁중과 나치탄압기간 뿐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Duberger, 주 1)의 책, 221 쪽.
- 5) 동 법안은 반론문 게재의무(법원의 강제게재명령)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발간 처분할 수도 있으며, 해당매체의 비용으로 별도의 반론문 3000부를 인쇄 발송하도록 하는 등 강한 제재조항을 갖고 있었다.
- 6) Henry Blin, Albert Chavanne, Ronald Drago, Jean Boinet, Droit de in Press; Libraires Techniques, Paris, Librerie Ge'ne'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82,4 쪽; Martin Lo"ffler, Heribert Golsong, Gotz Frank, Le Droit de Repense in Eropa=Das Gegendarstellungsrecht in Europa. Mo"glichkeiten und Harmonisie-rung, C. H. Beck, Mo"chen, 1974, 269 ~ 271 쪽.
- 7) 베스타디에의 제안으로 입법화된 1822년의 반론권은 뒤로르가 제안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져, 반론의 대상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뿐만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비평에 대하여도 인정되었으며, 그 주체도 신문보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언급되고 지명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881년의 출판법에도 그대로 계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학자에 따라서는 「유발기사」를 「원기사」 또는 「원문기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나(일본에서는 원문기사라고 한다), 반론을 유발한 기사라는 의미의 전달도 잘 되고, 원래의 용어번역에도 충실하므로 이하 유발기사라 한다.

9) Bernard Miolley, *Le droit de re'ponce en motie're de press,the'se*, Paris, 1963, 12 쪽.

10) 자세한 것은 Pierre Pactet, *Droit constitutionnel,Institutions politiques*, 8e e'd., Masson, Paris, 120 쪽이하 ,Georges Burdeau, Francis Hamon, Michel Troper,*Droit constitutionnel*, 21e e'd., Librairie Ge'ne'rale de droit et.de Jurisprudernce (LGDJ), Paris, 1988 참조.

11) Fernand Terrou, *Etude de Press*, Paris, P.U.F.,1967, 21 쪽.

12) Roland Cayrol, *Les Me'dias, presse e'crite radlo Te'le'vision*, P.U.F., 1993, 118 쪽.

13) Terrou, 주 3)의 책, 22 쪽.

14) 1835. 9. 9.의 출판법에서도 1822. 3. 25.의 반론권이 원문 그대로 유지되었다(§17) .

15) 프랑스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출판법인 것으로 알려진 1881. 7. 29.의 법도 반론권(§13)에 관한 한 1822년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게재방법과 제재형식이 부가되었을 뿐, 동법은 현재까지도 프랑스 반론권의 기본적인 규정으로 기능한다.

16) Lahav, *Press Law in Modern Democracy*, 1985,138 쪽.

17) 1881년법은 주로 시민의 권리와 공공질서, 도덕, 사회관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미국이나 기타 선진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다가 보다는 일반 법률(loi 와 decret)에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프랑스 언론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alration des droit de l'homme etdu citoyen)」에서 언급된 범위내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고있고, 1958년 제 5 공화국 헌법서문은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Lahav 주 16)의 책, 138~139 쪽.

18) 자세한 것은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982 참조 . 발췌번역본은 언론중재, 1989 겨울,99 ~ 103 쪽.

19) decret 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명령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프랑스의 독특한 법제도에 따라 decret 는 의회가 제정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고(이하 본 논문에서 D.P.라 함은 의회가 제정한 decret(de'cretparlementaire)를 말한다), 제정자에 따라 대통령의 de'-cret(여기에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하는 de'cret 와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의 의결을 거쳐 발하는 de'cret 의 두 종류가 있다), 수상(premier ministre)의 de'cret(이것 역시 수상이 단독으로 발하는 도령형식의 decret 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하는 decret 가 있다)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그 효력도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대통령령의 효력을 지니는 것, 또 부령이나 시행령의 효력을 지니는 것 등 다양하며, 우리식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ordonnance 라는 것이 따로 있어, 우리 법제에 알맞는 마땅한 용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경어 그대로 de'cret 라 한다.

20) 프랑스의 경우 언론법관련판례는 거의가 하급심의민사 · 형사판계(jugement 또는 arret)를 통하여 형성되었을 뿐,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el)의 판례(de'cision)는 극히

드물며, 반론권과 관련된 판례는 주로 1900 년도를 전후하여 활발히 전개되었고, 동 제도가 본국에도 오른 후에는 많이 줄어 들었다. Danziger, The right of reply in the USA and Europe, N.Y.U.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Fall, 1986, 185 쪽.

21)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2 쪽.

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나 법인이 아닌 생산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반론권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으며, 설사 유발기사에서 생산품이나 법인이 명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독자들이 읽어서 어느 제품, 어느 법인의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면 충분히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2 쪽.

23) 14 janvier 1844, D.P. 1847. 2. 220; 29 mai 1863, D.P 1863. 2. 211 : 15 november 1899, D.P 1900 : Cass. crim. 15 de'cembre 1934, 1934 Bull. crim. n° 210, 408 ; 25 janvier 1951, D.P. 1951. 1. 341.

24) 관계자(personne concerne'e)란 지명되거나 지시된 자 또는 동명이인으로서 본인과 동일시 된자 및 포괄상속인 (le'gataire universel)을 말한다.

25) 프랑스의 대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1829년 판결(Crim. 11 septembre 1829)이래 「일반적인 성격(carate're ge'ne'ral)」을, 그리고 1838년의 판결(Crim. 14 mars 1838)이래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왔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Crim. 27 novembre 1845, D.P. 1846. 1. 12; Crim. 21 mai 1924, D.P. 1924. 1. 97 등이 있다.

Cayrol, 주 12)의 책, 118 쪽.

26) Blin, Chavanne, Drago, Bolnet, 주 6)의 책, 64 쪽.

27) 사망으로 인한 반론권의 승계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학설상의 다툼이 있었는데, 긍정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관하여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유용하다고 주장했으며, 부정설은 상속인에게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첫째, 피상속인이 스스로 잊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폭로하는 결과가 되며 둘째, 상속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권리를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고 셋째, 피상속인에 관한 반론권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려울 것이며, 넷째, 사인의 반론권까지 인정할 경우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반론권의 폭주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8) 사자의 반론권이 문제된 가장 유명한 판례는 1860년의 Monseigneur

Rousseau 사건으로서,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Jean Jacque Rousseau 의 후계들은

「Orleans 주교가 펴낸 서산집으로 인하여 Rousseau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과 항소심은 「프랑스법은 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파기원 형사부는

「사자를 대리하는 상속인들은 사자가 후세에서 받게되는 모든 물질적 · 정신적 재산에 대하여 사자를 대리할 권리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Miolley, 주

9)의 책, 63 쪽.

29) Cass. Crim. 15 De'cembre 1934, D. 1935. 1. 27 Trlb. Corr. Selne 16 fe'vrier.

30)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3.

- 31) 이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는 해군제독 Duperre' 사건이 있는 바, 동사건에서 파기원은 「(당해 언론은) Duperre'와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유명한 인물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Cass. Crim. 28 December 1933, 1933 Bull. crim. no 251, 479.
- 32)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7 쪽.
- 33) Crim. 21 mai 1897, D. 1898. 1. 94
- 34) Charles Debbsch, Droit de l'audiovisuel, 1991, Dalloz, Parls, 489 ~ 490 쪽
- 35) T'errou, 주 3)의 책 44 쪽.
- 36) Terrou, 주 3)의 책, 102 쪽.
- 37) Lahav, 주 16)의 책, 42 쪽
- 38)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9 쪽.
- 39) 이러한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과 민사책임 소송만이 가능하다.
- 40) Trib. Corr. Seine IS de'cembre 1874, D. 1875. 3.352; Paris 25 avril 1910, D. 1910. 2. 225; Crim. 27Juillet 1933, D. 1935. 1. 76
- 41) Trib. Corr. Seine 2 fevrier 1868, D. 1870. 3. 39.
- 42) 문예비평이나 서평에 관한 반론권의 인정도 법조문상에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상의 다툼을 거쳐 파기원이 판례로서 확립한 원칙이다. 학자들은 <「과도한 비평」에 대하여만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대적인 정설을 주장하였고(다수설), 국민의회도 1902년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하급심도 상대적 인정설과 절대적 인정설 사이에서 판례가 엇갈렸으나, 파기원은 「언론의 활성화와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비평에 대하여도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문예비평에 대하여도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반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Revue des Deux Mondos 사건으로 동 신문에 Silvain 과 Jaubert 의 연극에 대한 비평이 실리자 원작자가 이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하급심과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파기원은 「어떤 공격도 반론권 주장에는 불필요하다」며 비평에 대한 반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였다. Cass. Crim. 21 mai 1924, D.P 1924. 1. 97.
- 43) Cass. Crim. 27 juillet 1933, D. 1935. 1. 76.
- 44) Crim. 28 avril 1932, D.P. 1932. 2. 69.
- 45) 물론 성실하고 선의로 행하여진 재판보도기사에 관하여는 반론권 외에 명예훼손, 모욕, 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919년 법 제 41 조 3 항).
- 46) Lo"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193 쪽.
- 47) 법관(magistrat)이 라 함은 재판을 하는 판사(Juge, conseiller, magistrat du sie'ge)와 논고를 행하는 검사(magistrat du parquet)를 총칭하는 것으로 원래의 어원은 라틴어로 관사(magister)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법원에는 거사를 담당하는 판사와 판결을 행하는 판사 외에도 법률적용과 공익보호를 감시하는 검찰(ministere public)이 함께 근무하며, 이들의 직무를 총칭하여 「법관직(magistrature)」이라 한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모욕」이라 함은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 48) 그러나 의회관련 기사도 악의로 게재된 경우에는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즉, 특정의원의 발언을 발췌 보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편도한 경우라든지, 상호문책과 공방을 주고받은 의사기록을 보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쪽 당사자의 것만 보도하는 예 등이다. Paris 20 fevrier 1836, D. 1836. 2. 287; Trib. Corr. Seine 16 Janvier 1847, D. 1847. 2. 508.
- 49)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2 Aufl., 1990, C.H.Beck, 291 쪽.
- 50) 19 세기 당시 개인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 정치성향과 신조에 따라 신문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초기의 반론권도 이에 관하여 이루어졌었다. Jean Rivero, Les Liberte's publiques, tomb 2, 1989, P.U. F., 256 쪽.
- 51) 정치적 논쟁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신문지면은 정치인간 정당간의 상호논쟁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7 쪽.
- 52) Terrou, 주 3)의 책, 38 쪽; Miolley, 주 9)의 책, 117 쪽.
- 53) 즐고,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소고(하)1, 인권과 정의, 1991. 6., 131 쪽.
- 54) 재반론의 형식과 게재방법은 반론의 경우와 동일하며, 재반론의 내용은 해당매체가 반론문 게재시에 덧붙인 내용에 한하므로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Crim. 25 mai 1882, D. 1885. 1. 397.
- 55) Rivero, 주 50)의 책, 257 쪽.
- 56)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3
- 57) Rivero, 주 50)의 책, 257 쪽.
- 58) 반드시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초기에 반론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언론이 아주 흔하게 「반론게재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반론권 시행 초기에 반론권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Lo"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46 쪽.
- 59) 수령 확인서는 일종의 공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Lo"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42 쪽.
- 60)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반론문이 제대로 도착하였는가, 누가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61) 이 때 집달관 비용은 반론게재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 62) Carol, 주 12)의 책, 119 쪽.
- 63) Cass. Crim. 3 mai 1923, D. 1923. 1. 93; Cass. Crim. 21 mai 1924, D. 1924. 1. 97; Cass. Crim. 2 fevrier 1938, D. 1938. 1. 245; Cass. Crim. 21 juillet 1955, D. 1955. 1. 749.
- 64) 그러나 유발기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파기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유발기사의 내용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Cass.Crim. 1er mars 1882, D. 1883. 1. 447.

- 65) 주로 국민적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체의 발행인은 동반론문의 게재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며,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반론을 게재하였을 경우 그 발행인은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Crim. 6 janvier 1865, D.P 1865. 1. 197.
- 66) 1822년 법과 1881년 법에는 「언론인에 대한 모욕」만을 규정해 놓았으나, 1919년 법부터는 동 표현을 「제 3자의 권리침해」로 변경하였는 바, 반론문의 내용이 제 3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나 명예훼손, 모욕, 야유, 비방, 기타비밀누설, 발설 등 이른바 악의적인 내용으로 타인의 정신적 실체적인 법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제 3자의 법익침해」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 3자란 유발기사와 전혀 무관한 자이므로 유발기사의 작성자나 발행인, 주필 등은 제 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성명이 명확하게 밝혀진 자」여야 하고, 반론게재가 거부될 만큼 충분히 제 3자가 거론되었는지의 판단은 법관이 한다. 그러나 제 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 3자를 반론문에 지명 또는 지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Crim. 1er decembre 1875, D. 1877.1. 66, Crim. 29 Juin 1900, D. 1902. 1. 525, Trib. Corr.La Reole 29 novembre 1905, D. 1906. 5. 37 Cass.Crim. 6 aout 1931, D. 1931. 1. 830: Cass. Crim. 1962.novembre 8, Bull. 1962, no 344, 668.
- 67) 제 3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기타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도 반론 권이 인정되나, 기자 등 언론인의 경우에는 반론권 행사의 관련자 내지 당사자라는 점에서 반론문의 내용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반론문의 내용 중에 가벼운 야유나 독설이 포함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아니하며, 명예훼손의 여부는 유발기사의 본문내용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판례는 유발기사가 격하고 모욕적이었을 경우 반론문도 그 정도의 언사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명백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L'exercice du droit de reponse no peut Justifier unediffamation). Crim 18 juillet 1896, D. 1897. 1. 55Crim. 11 decembre 1920, D. 1921. 1. 159; Trib. Civ.Seine 7 Juin 1950, D. 1951. 679.
- 68) 반론권은 인격권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주장이 담긴 반론은 그 내재적 한계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 69) 형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는 주로 제처와 편동, 기타 모욕적, 공격적 표현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로는 Crim. 21 Janvier 1860, D. 1860. 1. 104: Crim. 1er decembre 1875, D. 1877. 1. 66: Cass. Crim. 29 juin 1950, D. 1951. 1. 525 등이 있다.
- 70) 반론권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반론문이 실제로 침해된 사항에 관한 반론을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의 반론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권리의 남용이다」. Crim. 6 janvier 1865, D.P. 1865.1. 197. 게재
- 71) Terrou, 주 3)의 책, 127 쪽.
- 72) Miolley, 주 9)의 책, 211 쪽.
- 73)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61 쪽.
- 74) 공시, 최고 등 법원이 일반적으로 신문 등을 통하여 게재하는 공고문의 가격을 말한다.
- 75) Miolley, 주 9)의 책, 63 쪽

- 76)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64 쪽.
- 77) Terrou, 주 3)의 책, 302 쪽.
- 78) Cass. Crim. 8 janvier 1921, D. 1921. 1. 223.
Crim. 14 mai 1887, 5. 1881. 1. 281 : Cass. Crim. juillet 1928, D. 1928. 465.
- 79) Crim. 14 mai 1887, 5. 1881. 1. 281 : Cass. Crim. 8 juillet 1928, D. 1928. 465.
- 80) 반론문 게재를 가장 빠르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페루로서 페루의 1961년 언론법 제 4 조 2 항은 게재일을 반론문 수령 바로 다음날로 규정해 놓고 있다.
- 81) 이 때의 기간은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아니한 허의 발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2 일 이후에 발행될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인쇄가 시작되었으면 반론권은 그 다음 호에 실리게 된다. 이와 같은 법 해석과 판례는 인쇄기술이 아직 낙후되어 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ass. crim. 4 fevrier, D. 1847. 1. 31: Cass. crim 6 octobre 1959, Bull. crim. no 409, 799.
- 82) Rivero, 주 50)의 책, 256 쪽.
- 83) 그러나 문화면에 실려야 할 반론문이 스포츠 면에 실리는 등 지면의 성격이 완전히 틀러지는 경우에는 반론문을 재 게재 하여야 한다.
- 84) Cass. Crim. 8 janvier 1921, D. 1921. 1. 223.
- 85) Rivero, 주 50)의 책, 258 쪽.
- 86) 1881년법 이전에는 출판에 관한 재판이 중죄재판소(Cour d'Assises)에서 행해졌으나, 1881년 법부터는 경범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역자에 따라서는 경범재판소를 단순히 우리 식으로 형사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프랑스에서 형사법원은 *juridiction pe'nales*, 또는 *juridiction re'pressive*(진압법원)이라고 통칭하기는 하나,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원의 체계하에 함께 있으면서 「그 업무상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라는 의미」에서 형사법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형사법 원(*juridiction pe'nales*)은 다시 일반형사법원(*juridiction pe'nales de droit commun*)과 형사특별법원(*juridiction penales specialistees*)으로 구성되는 바, 일반형사법원(*Juridiction penales de droit commun*)은 착사만 담당하는 액사법원(*juridiction penales d'instruction*)과 판결만 관장하는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으로 구성되고, 형사특별법원은 군사법원(*juridiction militaire*)과 소년법원(*tribunal pour enfants*)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형사법원에 속하는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은 다시 경범법원과 중죄법원(*cour d'assises*), 그리고 위경죄를 담당하는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으로 구성된다(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R3II-1) 제 522 조). 이하에서 법원이라 함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라는 의미에서의 *juridiction* 일 뿐, 기관으로서의 법원, 즉 *cour*, *conseil*, *tribunal* 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사법조직이 우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특이하여 경범재판소를 단순히 형사법원이라고 하면 오역이 되는 것이다.
- 87) 권리침해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과 보급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 88) 손해배상소송은 경범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Cour d'appel)에 한다(사법조직법 §211~I, §221~I).
- 89) 이 때 소환영상(assignation)에는 고발사실을 정확히 기재 확정하여야 하며, 소환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관할법원, 청구의 목적, 출정하지 아니할 경우(non Comparution)의 제재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53, §56).
- 90) 이 기간을 보통 출정기간이라 하는바, 출정기간이란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기간을 의미하게 되는바(신민소법 56 조III),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출정기간이 짧은 것은 모든 언론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어 변호사 선임에 별도의 기간이 필요치 아니한데다 반론권의 시행은 빨리 될수록 그 효과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91) 우리나라에서는 소장(acte introductif d'instance)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의 제기가 이루어지나,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환영상이 당사자에게 교부되어 당사자를 소환하였을 때{이를 형식의 원성(accomplissement de formalites)이라 한다} 비로소 소송이 재기된 것으로 본다(신민소법, nouveau code de proceureclvile § 56)
- 92) 급속심리는 대심법원장의 권한중의 하나로서 주로 신분행위에 대한 확인이나 압류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지는바, 일반적으로 본안결정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청을 받아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된다(ordonnance sur requete)
- 93) 급속심리는 경축일 이나 농업기간(les jours ferieso chomes)에도 당사자를 소환, 기일을 잡을 수 있다(신민소법 §485)
- 94) 피고가 관석인 상태에서 중심으로 내려진 명령(1'ordonnance rendue en dernier ressort par default)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이의(1'opposition)를 역시 2 주일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신민소법 §490 II, III).
- 95) 항소심도 소제기후 10 일 이내에 급속심리를 하게 된다(§13VIII).
- 96) Paris 15 novembre 1899, D. 1901. 1. 137.
- 97)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하는바, 판례는 1 프랑이라는 「상징적인 금액(franc symbolique)」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Danziger, 주 20)의 책, 189 쪽.
- 98) 1919 년 법에서는 벌금이 18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였다(§13 I).
- 99)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67 쪽.
- 100) 미국에서는 라디오, TV 등 방송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형성되고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사기업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1982 년까지 공영체제였으며, 방송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la liberte desspectacles)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반론권의 인정이 늦어졌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Duverger, 주 1)의 책, 224 쪽.
- 101) Debbasch, 주 34)의 책, 486 쪽.
- 102) 이러한 반론방식의 규정상의 어려움은 입법안에 대한 토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바,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는 「유발기사와 같은 지면, 같은 위치, 같은 활자」로 반론문을 게재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방송양식이 워낙 다양하여 반론형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Debbasch, 주 34)의 책, 485 쪽.

- 103)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는 1967년까지도 계속되었는바, 주요한 판례를 보면,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la Seine, le 27 fevrier 1929; Paris, 27 Novembre 1929, D.P1929. 11. 155: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la Seine, 10mai 1967 등이다.
- 104)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63
- 105) 이들 정부법안에서는 유발방송을 뉴스와 토론, 다큐멘터리 등 사실적 보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반론시간을 황금시간대(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닌 주간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는 등 현재의 반론방송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0 쪽.
- 106) Debbasch, 주 34)의 책, 487 쪽.
- 107) 동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1975. 8. 7. 의 Decret 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나, 동규정은 다시 1974. 8. 7 법 제 34 조에 의하여 폐지되고 1975. 5. 13. 의 Decret(no 75~341)가 시행되는 등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관련법은 잦은 개정과 폐지로 변화가 많았다.
- 108) 동법은 방송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통신망에의 접근권(la liberte d'accès)도 규정하고 있어, 1881년 법과 함께 프랑스 언론관련법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법으로 꼽히고 있다.
- 109) 1972년의 ORTF 법과 1974. 8. 7. 의 방송법(lestatut de la radiodiffusion-télévision), 1975.5.13. 의 decret 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원에 회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위헌심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0 쪽; Debbasch, 주 34)의 책, 485 쪽
- 110) La de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7Juillet 1982, no 82~141 자세한 내용은 L. Favoreu, L.Philip, Le conseil constituttionnel, P. U. F., Que sais-Je?J, 4eédition, 1988 참조.
- 111)Cayrol, 주 12)의 책, 187 쪽.
- 112) Europel, Radio-TeleLuxembourg, Radio Montecarlo, Sud Radio(Radio Andorre) 등 룩셈부르크와 안도라, 몬테카를로의 방송국들이 프랑스 영내에서 개국을 하게 된 것이다. Duverger, 주 1)의 책, 225 쪽.
- 113) 이들 변방방송국의 자본가운데 상당부분을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다.
- 114) 자국의 방송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변방라디오에 대해서는 반론권의 인정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변방라디오가 기본적으로 광고판매를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상업방송이고, 따라서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다 보면, 자연히 인격권 침해가 많아지리라는 점 때문에 가능하였다. Duverger, 주 1)의 책, 225 쪽.
- 115) 역사적으로 계속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여 온 프랑스에서 지방민영방송이 허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이후의 일이므로, 방송에서의 반론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116) Debbasch, 주 34)의 책, 487 쪽.
- 117) Debbasch, 주) 34 의 책, 489 쪽.
- 118) 해외영토란 GUSDeloupe, Guyane, Martinique, Reunion 등 네 개의 프랑스령을 말한다.

119) 해외도란 섬으로서 departement 의 행정구역인 Basse-Terre, Fort-de-France, Saint-Denis de la Reunion 등 세 군데를 말한다.

120) 국영방송체제를 취하고 있던 당시에는 라디오와 TV 의 프로그램이 TF 1, Ann 2, FR 3, Radio France 등 네 군데에서 제작 배포되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한 한 각 프로그램협회의 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으므로, 반론방송의 요구를 전국프로그램 협회의장 앞으로 하였다 그러나 방송의 민영화 조치 이후 각 방송의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해당방송사의 책임이므로 반론권 요청도 각 방송사대표에게 한다.

121) 유발방송과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대의 제공을 의미 한다.

122) 유발방송을 한 방송사의 스튜디오와 설비, 기계를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123)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등 오락성의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방송 역시 해당 매체의 서두에 반론의 제기가 있었음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고지방송이 첨가된다.

124) 적어도 하룻동안은 반론의 사실이 방송되어야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대중의 재양에 맡긴다(mise a la disposition du public)」는 것이다(1986. 9. 30. 법 Loi no 86~1067 제 83 조). 자세한 것은 Guy Drouot, Le nouveau droit de l'audiovisuel, 1988, 123 쪽.

125) 프랑스의 대심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은 각 departement(우리의 행정구역으로는 도와 유사하나 그 규모가 우리보다 작다)와 해외영토, 해외도에 평균 하나씩 있는 법원으로서 인구수와 사건 수,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departement 에 따라 4~7 개의 대심법원을 두기도 하는바, 제 5 공화국의 1958. 12. 28.의 decret 이전에는 대심법원을 민사법원(Le tribunal civil)이라고 하였었다. 자세한 내용은 Georges Burdeau, Francis Hamon, Michel Troper, Droit constitutionnel, Librairie Gene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Paris, 21e ed. 1988, 664~667 참조. 이 대심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은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지방법원보다 작기는 하나, 지방법원 격에 해당하므로 학자에 따라서는 「지방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법원격에 해당하는 하급심법원으로는 대심법원 외에도 소심법원(tribunal d'instance).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노사조정법원(conseil de prod'hommes), 사회보장사건원(tribunal des affaires de securite sociale), 농촌 임대차조신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등이 있는데다가, 프랑스의 사법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우리와는 비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다양한 법원조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대심법원」이라고 한다.

126) 시청각최고위원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각 방송사에 제기되었던 227 건의 반론권 요구사례의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약 25%인 53 건만이 반론 방송되었을 뿐, 159 건은 거부되었고, 거부건수 가운데 6%인 9 건만이 대심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나타나, 반론방송되는 비율도 적고 거부된 사건 가운데 대심법원에 제소하는 건수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의 이유로는 기간경과와 부당한 요구가 가장 많아, 결국 프랑스에 있어서 반론권의 실행은 전파매체에서보다는 인쇄매체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Drouot, 주 124)의 책, 124 쪽.

127) 전국반론권위원회의 위원은 3년 임기로 국가평의회에서 2명, 파기원에서 2명, 방송위원회(O.R.T.F.)에서 1명을 추천 받아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다. 동위원회의 권한은 4개의 전국프로그램협회장 앞으로 제기된 반론방송요청이 해당협회장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거부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반론권자가 동위원회에 재신청한 반론요구서를 일괄적으로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 뒤 48시간 내에 각 당사자(피해자와 해당 방송사)에게 그 결과(강제반론방송명령, 또는 각하 결정 등)를 통보하여 주는 일이다. 반론권자가 동위원회에 반론요구서를 접수시킬 때, 동요구서에는 유발방송의 날짜, 프로그램, 시간, 유발방송의 내용, 자신의 법익침해내역, 반론문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동위원회에서 반론방송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국프로그램협회는 자체의 방송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까닭에 TV에서의 반론방송은 TFI과 Ann2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만일 동위원회의 반론방송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협회장은 1,000 프랑에서 2,000 프랑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 벌금액수는 신문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다. 약 7년 동안에 걸친 동위원회의 활동은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고, 그 성과도 좋지 아니하여 강제 반론방송 결정은 연평균 10%정도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신문과 방송의 모든 반론권 사항을 다루는 데에 비하여, 프랑스의 전국반론권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이고, 단지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만을 취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전국반론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최고행정재판소격인 국가평의회(Conceil d'Etat)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었다(방송이 국영체제였으므로 방송에 관한 사항은 최종심이 국가평의회에 관할사항이었다). 그러나 방송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반론권위원회는 1982. 7. 29. 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시청각최고위원회(La HauteAutorite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가 창설되었는바,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시청각매체의 독립과 다양성, 프로그램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뿐, 반론권 분쟁에 관한 사항은 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에 대한 반론권 소송도 일반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이전의 프랑스방송협회(Officedo Radio-Television francaise)와 전국반론권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새로 통합 발족한 것으로, 동위원회는 헌법평의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이 3인, 국민의회의장이 3인,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여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6년 단임의 위원은 3년마다 1/3씩 교체되고, 헌법평의회와 마찬가지로 시청각최고위원회 의장도 대통령이 지명 한다(1989.1. 17. 법 no 89-25 제 4 조, 1994. 3. 1. 개정). 방송에 있어서의 동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recornrnandation)는 통보된 때로부터 (a compter de leur notification) 24시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바. 동위원회의 10년 동안의 활동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Duverger, 주 1)의 책, 227쪽 참조.

128)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는다.

129) Debbasch, 주 34)의 책, 287쪽.

130) 정치불안이 극에 달하였던 프랑스대혁명 직후에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서 정정문이 게재되는 예를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정치가 비교적 안정된 제 5공화국 이후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Mlolley, 주 9)의 책, 167쪽.

- 131) Rivero, 주 50)의 책, 255 쪽.
- 132) 물론 1835 년과 1852 년의 출판법도 신문이 의무적으로 정부의 공보사항과 정정기사를 신도록 규정하였으나, 보다 본격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의 시행방법을 세밀하게 규정 한 것은 1881 년법이다.
- 133) 1852. 2. 17.의 decret 는 정부의 공보사항과 정정기사를 무료로 게재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면이 정정기사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48 쪽.
- 134) Jean Pinto, La liberted'opinion, these, Paris, 1955,46 쪽.
- 135) 그러나 소송대리인, 공증인, 시청서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Miolley, 주 9)의 책, 126 쪽 : Rivero, 주 50)의 책, 257 쪽.
- 136)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49
- 137) 우리 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상 반론권이다.
- 138)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0
- 139) Lahav, 주 16)의 책, 42 쪽; cayrol, 주 12)의 책 86 쪽.
- 140)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0
- 141) Miolley, 주 9)의 책, 204 쪽.
- 142) 「공공의 정신」 과 「공적 진실」 이란 국가운영과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정확하고도 소상하게 알려져야 하며, 언론은 이에 관한 보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Lö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42 쪽.
- 143) Rivero, 주 50)의 책, 257 쪽.
- 144)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행정은 편집광적이라고 할만큼 비밀스럽게 (le gout maniaque du secret) 이루어져, 언론매체의 과잉보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담보와 왜유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정정보도청구권의 시행으로이러한 행정부의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정확한 언론의 보도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자유주의의 강한 요구(exigence du liberalisme)에 부응하는 제도를 수립한 것」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Rivero, 주 50)의 책, 257 쪽.
- 145) Paris 15 novembre 1899, D.P. 1900. 2. 116 ;Amiens 12 janvier 1901, D. P 1901. 1. 394 ; Chambéry25 janvier 1951, D. 1951. 1. 341.
- 146) 반론권보다 권리행사기간이 짧은 이유는 정정권의경우 공무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3 개월이 지날경우 이미 이와 관련된 국가행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국민이 그 보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ö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43 쪽.
- 147) 이 때 정부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불당하며 불법적이라는 입증은 발행인이 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동청구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발행인은 거의 없다. Blin,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1 쪽.
- 148)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52 쪽.
- 149) Crim. 21 fevrier 1889, D. 1890. 1. 189 ; Crim. 3mai 1923, D. 1923. 1. 93.
- 150) Crim. 27 mai 1910.
- 151) Terrou, 주 3)의 책, 27 쪽.

152) 수많은 개정과 증보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1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정과 증보를 통해 이루어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병원이 해석을 내리지 아니한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Maurice-Hersant, Le droit de re-pense, Recueil Dalloz Sirey de Doctrine, de Jurisprudence et de Legislation, 1982, 168 쪽.

153) Cayol, 주 12)의 책, 11 쪽.

154) Danziger, 주 20)의 글, 187 쪽.

155) Maurice-Hersant, 주 152)의 책, 167 쪽.

156) Blin, Chavanne, Drago, Boinet, 주 6)의 책, 102

157) Loffler, Golsong, Frank, 주 6)의 책, 46 쪽.

158) Laed 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7juillet 1982, no 82-141. ¹

- 이화여대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
- 저서: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정정도청구권에 관한 소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외
- 현재 서울시립대 강사